

● 제29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박기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979

### I. 조례안 개요

#### 1. 발의자 및 제안경과

- 가. 발 의 자 : 박기재 의원외 9명
- 나. 발 의 일 : 2020. 10. 16.
- 다. 회 부 일 : 2020. 10. 2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 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출연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본 조례 개정으로 연례적 출연동시에 따른 입법 및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조례해석의 명확성을 기해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사전의결 실시를 위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연례적, 반복

적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안 심사를 정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시장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조례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출연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매년에서 격년인 2년마다 받도록 하여, 입법 및 행정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임.

### 2 주요사항 검토

#### □ 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 기간 규정 (안 제11조제2항 신설)

-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sup>1)</sup>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3<sup>2)</sup>에 따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교부를 위해 서울시가 예산안 제출 전 매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던 것을, 그 기간 등을 명시하여 2년마다 받도록 하려는 것임.

1)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1조 (기금 및 출연금 등) ① · ② (생략) <u>&lt;신설&gt;</u>	제11조 (기금 및 출연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아야 한다.

- 이는 서울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시행 2020. 7. 21.] [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2020. 7. 21., 일부개정]에 명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이나 연례적, 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의결을 실시하고자 한 것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306 출연금	01.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중략)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u>※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u> (생략)
------------	--

\*출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의2항 관련 [별표11]

- 여성가족재단은 법령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sup>3)</sup>에 따라 서울시의 출연으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고,
-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규정이 마련된 후, 2015년부터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로서 매해 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여부를 결정해 온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조례로 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 할 것임.
- 다만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2년마다 얻도록 하는 것은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킨다는 평가도 존재하는 바, 사전의결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

※ 훈령은 하급기관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함<sup>4)</sup>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3조(문서작성의 원칙)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시행문형식(이하 “시행문형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 번호를 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집행의 권능 없는 바, 상급기관은 훈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하급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며, 다만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급행정구성원을 징계하는 길 밖에 없다할 수 있음.

###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2020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교부를 위해 서울시가 예산안 제출 전 매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던 것을 변경하여 2년마다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및 행정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의회동의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법률로 규정된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킨다는 평가도 존재하는 바,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